

補完하고, 同施行令에서 委任된 事項을 條例로 制定을 하여서 서울特別市 水道施設移設 등의 原因者 및 損壞者負擔金 徵收에 法的 效力의 發生根據를 規定하여 水道施設의 保護와 上水道 運營管理에 안전을 기하고자, 서울市長이 94年 1月 11日 提案한 條例案中 多少 미흡해서 修正되어야 할 事項으로 提案된 것을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研究檢討한 결과, 第1條의 施設保護 主체성 設定 補完, 第2條第3項의 用語에 있어서 原因者 負擔金 施設物 原狀復舊 費用 說明, 第4條第1項에서 負擔金 算定基準 適用의 範圍와 예의성 明示 補完, 第5條에서 申告義務者, 管理責任 主體 未設定에 대한 補完, 第10條에 있어서는 第1項에서 水道施設 이외의 他施設物 費用 設定 補完, 第2項에서 市長의 損壞者에 대한 原狀復舊法 設定 補完, 第3項에서 市長과 水道事業者와의 名稱 修正, 第11條第2項에서 原狀復舊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第12條第1項에서는 異議申請 方法 設定 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와 같이 修正하여 議決하였습니 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 條例案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議員들의 深度 있는 檢討로 修正 議決된 서울特別市水道施設移設等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を 參考해 주시고, 本 案件이 오늘 本會議에서 議員 여러분께서 滿場一致로 議決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는 맑은물 生産供給의 生産管理, 施設管理, 給水政策管理에 있어서 事業 保護 法的管理와 漢江原水水質監視 강화에 힘 쓰고 研究 노력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質的 向上 推進과 上水源 汚染 防止에 대한 세미나 實施, 그리고 八堂湖, 蠶室水中淤, 取水源, 淨水場 등의 現場 視察 등 水資源政策 向上과 市民 福祉增進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全 國民의 關心事項인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供給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特別市水道施設移設等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에 대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具齊南議員님 수고했습니다.

요즘 巷間에 제일 問題되어 있는 맑은 물 供給에 관한 水資源管理委員會 議員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審査報告에 대한 구체적인 報告에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水道施設移設等原因者및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목을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중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 다음에”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에 대한을 신설하여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로 한다.

안 제2조제③항중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원상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안 제4조제①항중 “기준으로”를 “기준등을 적용”으로 하고 제①항2호중 “미만인 경우 보수하는”를 “미만인 경우 할증을 고려하여 보수하는”으로 한다.

안 제5조제①항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①항중 “손괴로 인하여 타시설 물”을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등 타시설 물”로 한다.

<p>안 제10조제②항중 “원상복구 명령”을 “원상 복구”로 한다.</p> <p>안 제10조제③항중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수도사업자가 우선 조치하였을 경우 손피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를 “손피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피자에게 징수”로 한다.</p> <p>안 제11조제②항중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를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다.</p> <p>안 제12조 제①항중 “시장에게 이의 신청”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으로 한다.</p> <p>안 제19조중 “이외에는”를 “이외의 사항은”으로 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피자부담금 징수조례(수정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피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②“손피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피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피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③“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④“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⑤“도로복구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피자로 인하여 손피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⑥“도로결빙방지 작업비”라 함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피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⑦“출동작업 경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피자로 인한 원상복구 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p> <p>⑧“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⑨“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제3조(부담금의 범위) ①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비등 수수료 포함)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량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 5.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이하 “출동작업경비”라 한다) 6. 지원경비 7. 홍보비등 기타 <p>②손피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p>
--	--

<p>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비등 수수료 포함)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도물 량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등 기타 <p>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영 제35조 및 제36조에 규정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에 의한다. 2.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예산회계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긴급누수 복구공사 단가계약 금액 및 장비 사용료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재료비중 직관은 보수시 사용된 재료의 길이가 1본 미만인 경우 할증을 고려하여 보수하는 길이에 1.2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도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산정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효율에 의한다. 4.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 사업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도로복구비는 서울특별시도로원인자부담금 및도로손괴자부담금급수조례에 의거 산출한 도로굴착 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단,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 	<p>접복구비는 도로 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 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도로결빙방지 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서울특별시고시구역화물자동차요금에 준하며, 직원 경비는 서울특별시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9.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p>②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 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p> <p>제5조(손괴자등의 의무) ①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 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비용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p>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징취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등 타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8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9조(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 징수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등 타 시설물</p>	<p>또는 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상수도공사의 하자기간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손괴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2조(이의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한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p>
---	---

<p>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시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에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p> <p>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p> <p>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제16조(타시설물의 설치등) 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타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p>	<p>철거 또는 이설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p> <p>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p> <p>제17조(과태료)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 사실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18조(권한위임) ①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p>②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 규정에 의한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제반조치 2. 제7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3. 제8조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4. 제9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징수 5. 제10조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6. 제11조 규정에 의한 하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징수 7. 제12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 8. 제1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정산 처리 9. 제14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 처리
--	---

<p>10. 제15조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11. 제16조 규정에 의한 타 시설물의 이설 등 12. 제1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 서울특별시상수도시설손괴원인자부담처리지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p>	<p>1994年 1月 6日 서울特別市教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1月 11日 議長으로부터 當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및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上程한 순서대로 一括 報告드리겠습니다.</p> <p>먼저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p> <p>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收入證紙 種類中 10원권을 廢止하고 1萬원권을 새로 新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收入證紙 種類中 10원권을 廢止하고 1萬원권을 新設하는 것은 民願人的 便宜와 行政의 能率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p>
<p>7.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8.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9.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5時 49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그리고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이상 3件을 一括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文化教育委員會의 崔沆洛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崔沆洛議員 안녕하세요? 文化教育委員會所屬 崔沆洛議員입니다.</p>	<p>다음은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p> <p>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教育法施行令, 1993年 11月 13日 大統領令 第14004號가 改正이 되어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 事項은 條例로 規定하던 것을 教育監이 教育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正하여 告示하도록 하였으므로 現行 條例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p> <p>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를 해 드리겠습니다.</p> <p>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教育法施行令, 1993年 11月 13日 大統領 第14004號가 改正되어 서울特別市 高等學校 學群設定에 關한</p>